2025년도

#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안내문

학교폭력 피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**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** 신속한 치료를 위해 법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신체 · 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비 등 비용을 공제회가 심사결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(상환청구)하는 제도입니다.

## 지원 범위 및 기간

| 구분 | 세부사항 | 인정기간 | 보상심사위원회 결정 시 |
|---|---|---|---|
| 심리상담 및 조언 |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| 2년 |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|
|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| 의료기관, 보건소, 약국 등에서의 치료비용 및 약제비 | 2년 |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|
| 일시보호 |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 보호 비용 | 30일 | |

※ 교육감 지정 기관은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으로 문의

## 지원대상 학교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·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

## 처리 절차

**학교폭력 피해발생**

**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**

- 피해학생 보호조치
- 분쟁조정 : NO
- 분쟁조정 : YES

**학교안전공제회**

·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사고 통지 (학폭위 결정서 첨부 필수)
· 청구인은 치료비 청구
· 14일 이내 심사·결정, 경우에 따라 연장

사고통지 ⇒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
청구 ⇒ 온라인(시스템)/우편 가능

자체 합의(종결)

**구상권 행사 및 법적절차 진행**

·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

##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출 서류

| 학교폭력사고통지 시(학교) | 치료비 청구 시 |
|---|---|
| 학교폭력사고발생 통지서 |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 |
| |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|
|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인적사항 | 진료비 세부내역서 |
| | 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+처방전 |
| | 일반진단서(공제회에서 요청 시 제출) |
|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|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학생기준) |
| | 청구인 통장사본(온라인 청구 시 생략) |

※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청구서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**홈페이지 ▶자료실 ▶보상업무**에서 출력하여 활용

## 주요 문의사항

**Q** 청구하는 모든 비용이 인정되나요?
**A** 치료비 등의 결정금액은 청구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이미 가해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받은 치료비(합의 포함)와 중복되지 않습니다.

**Q** 학교장의 자체해결의 경우에도 공제회로부터 치료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?
**A** 학교장 자체해결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,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
**Q** 안경 등 재산(물품)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**A** 재산(물품)과 관련된 피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
**Q** 정신적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?
**A** 아니요. 받을 수 없습니다.

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TEL. 043)252-7109

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s://www.schoolsafe.or.kr/ ⇒ 사고통지 및 청구
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https://chungbuk.ssif.or.kr/ ⇒ 안내자료 및 서식 다운로드